##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5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정일영·박지원·허 영

김문수・김 윤・안태준

문금주 • 이용선 • 정진욱

박선원 · 송재봉 · 이광희

박용갑・황명선・조인철

강준현 · 김교흥 의원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인원과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현행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의 수와 감면액도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올해 말에 일몰 예정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에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해당 법안의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5년 12월</u>	<u>2028년 12월</u>		
<u>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31일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